

[서면어반센트데시앙]아파트 명의변경 일정 및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매매·증여(공동명의)로 인하여 명의변경이 필요하신 계약자님께서서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명의변경 일정 및 예약 안내

- ▶ 시간 : 10:00~17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▶ 장소 :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견본주택(부산진구 신천대로 186)
- ▶ 예약방법 : 051-817-7787 대표번호로 유선 예약 ※ 방문 일정 및 시간 예약 필수

## □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안내

|   |   |
|---|---|
| ① | 매도인(증여인) - 매수인(수증인) 분양권 계약 체결 : 매매계약서 / 증여계약서 작성  |
| ② | 당사 견본주택 대표번호(051-817-7787)로 명의변경 신청 일정 예약   |
| ③ | 부산진구 토지정보과(1층) 방문 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(매매시 거래계약신고 필증, 증여시 증여계약서 검인본 발부)<br>※ 구비서류<br>- 매매시: 매도매수인 신분증, 인감도장, 부동산매매계약서,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, 공급계약서<br>- 증여시: 증여수증인 신분증, 인감도장, 증여계약서, 공급계약서 |
| ④ | 당사 견본주택 방문: 명의변경 신청 / 승인  |
| ⑤ | 매도인(증여인) 부산진세무서 방문: 양도소득세 / 증여세 신고  |

## □ 구비서류 안내

※ 모든 구비서류는 명의변경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에 한하며,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 되도록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매도인(증여인)   | 매수인(수증인)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본인                  | ① 분양계약서 원본(발코니·유상옵션 계약서 포함)<br>②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(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)<br>③ 부동산 매매계약서<br>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(매도용, 본인발급용)<br>⑤ 인감도장      ⑥ 주민등록표등본 1통      ⑦ 신분증   | 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(일반용, 본인발급용)<br>*전자(온라인)인감증명서 사용 시 용도 및 제출처 예시<br>※ 용도: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용 / 제출처: 메디컬타운티지역주택조합<br>② 인감도장     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      ④ 신분증 |
|                     | (공통) 전자수입인지<br>- 전자 시 인지세(거래가격기준 1억 초과 ~ 10억원 이하, 15만원)를 납부 해야하며,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매수인에게 인계되어야 합니다.<br>- 전자수입인지는 취급 은행 방문구매(현금 지참) 또는 인터넷( <a href="http://https://www.revenustamporkr/">http://https://www.revenustamporkr/</a> )으로 발급 가능합니다.<br>- 인지세 부담비율은 계약 당사자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.  |  |
| 증여<br>·<br>공동<br>명의 | ① 분양계약서 원본(발코니·유상옵션 계약서 포함)<br>②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(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)<br>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(매도용, 본인발급용)<br>④ 인감도장     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      ⑥ 신분증<br>※ 증여는 인지세 해당 없음   | 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(일반용, 본인발급용)<br>*전자(온라인)인감증명서 사용 시 용도 및 제출처 예시<br>※ 용도: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용 / 제출처: 메디컬타운티지역주택조합<br>② 인감도장     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      ④ 신분증 |
| 대리인                 | 대리 불가  | 상기 매수인(수증인) 서류 일체 외 추가 +<br>①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<br>② 매수인(수증인) 인감증명서 1통(일반용, 본인발급용)<br>③ 대리인 신분증   |
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| - 명의변경 신청은 2차 계약금(5%) 완납세대에 한해 가능합니다.<br>- 공급계약서 제4조에 의거, 공급대금 연체가 없는 세대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 합니다.(연체시 불가)<br>- 매도인(증여인)매수인이 함께 방문해 주셔야 하며, 매도인(증여인)의 경우 위임이 불가합니다.<br>매수 대리인 방문 시, 본인 구비서류와 대리인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.<br>-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하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시에는 대리인 진행이 불가합니다.<br>-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,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지세(15만원)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<br>- 명의변경 완료 후 취소 처리는 불가합니다. 명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사전에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견본주택에서는 세금 관련 상담 불가) |  |